

[별표 1]

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3년)

○ 3등급 주야간보호 이용료 [월 한도액 1,417,200원]

구분/이용시간	6시간 이상	8시간 이상	10시간 이상
1일당	44,270	55,080	60,720
1일 본인부담금 (15%)	6,641	8,262	9,108
1일 식비/간식비	2,500	2,500	2,500
1일 합계이용료(평일)	9,141	10,762	11,608

○ 4등급 주야간보호 이용료 [월 한도액 1,306,200원]

구분/이용시간	6시간 이상	8시간 이상	10시간 이상
1일당	42,770	53,580	59,190
1일 본인부담금 (15%)	6,416	8,037	8,879
1일 식비/간식비	2,500	2,500	2,500
1일 합계이용료(평일)	8,916	10,537	11,379

○ 5등급 주야간보호 이용료 [월 한도액 1,121,100원]

구분/이용시간	6시간 이상	8시간 이상	10시간 이상
1일당	41,240	52,050	57,690
1일 본인부담금 (15%)	6,186	7,808	8,654
1일 식비/간식비	2,500	2,500	2,500
1일 합계이용료(평일)	8,686	10,308	11,154

○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이용료 [월 한도액 624,600원]

구분/이용시간	6시간 이상	8시간 이상
1일당	41,240	52,050
1일 본인부담금 (15%)	6,186	7,808
1일 식비/간식비	2,500	2,500
1일 합계이용료(평일)	8,686	10,308

○ 재가급여 수급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일반	감경 40%	감경 60%	기초수급지원대상
15%	9%	6%	0%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